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68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정혜경·전종덕·김준형
박홍배·김태선·서미화
용혜인·윤종오·손슬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8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연간 국가 전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에서 흡수하거나 저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뺀 것을 말한다.

8의3. “탄소예산”이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국가 전체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용가능한 총량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
2. 2035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5퍼센트 이상
3.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10.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예산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여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 중 “중소상공인”을 “중소상공인, 장애인”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를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이 전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탄소예산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 후단 중 “중소상공인”을 “중소상공인, 장애인”으로,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를 “대표성을 반영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u> <u>이란 연간 국가 전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에서 흡수하거나 저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뺀 것을 말한다.</u>
<u><신설></u>	<u>8의3. “탄소예산”이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국가 전체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용가능한 총량을 말한다.</u>
9. ~ 17. (생략)	9. ~ 17.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u>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비율만큼</u>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 <u>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u> ----- ----- ----- -----.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⑥ · ⑦ (생 략)

<신 설>

1.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

2. 2035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5퍼센트 이상

3.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9. (현행과 같음)

10.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 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④ (생략)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신 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예산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여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중소상공인, 장애인-----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이 전체 위촉 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14. (생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u>중소상공인</u>,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u>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생략)	<u>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 ⑩ -----제9항----- -----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탄소예산의 설정에 관한 사항</u> 3. ~ 14.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중소상공인, 장애인</u>----- -----<u>대표성을 반영하여야</u>-----. ④ (현행과 같음)
--	---